

[서식 :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-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]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3서식]

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

요청인	성명	연락처
	생년월일	환자와의 관계
	주소	

「의료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기능의 사용을 요청합니다.

二〇一九年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의료인 등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며, 수술 진행 중 응급으로 의료인이 고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- 촬영한 영상정보와 녹음파일의 열람·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 -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 -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